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9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국어의로마자표기법 개정(문화관광부 고시 2000-8호 2000. 7. 7)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타입을 로마자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2호의 별표2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타입 개정
- CHUNGCHONGBUK-DO ⇒ CHUNGCHEUONGBUK-DO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 철인중 “CHUNGCHONGBUK-DO” 를
“CHUNGCHEONGBUK-DO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[별표2] 철인</p>  <p>The seal of Chungcheongbuk-do is circular. It features a stylized figure in the center, possibly representing a person or a symbol. The text 'CHUNGCHONGBUK-DO' is written in a semi-circle at the top, and '충청북도' is written in Korean at the bottom.</p>	<p>[별표2] 철인</p>  <p>The seal of Chungcheongbuk-do is circular. It features a stylized figure in the center, possibly representing a person or a symbol. The text 'CHUNGCHONGBUK-DO' is written in a semi-circle at the top, and '충청북도' is written in Korean at the bottom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<문화예술진흥법>

제6조(국어심의회)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굴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.

제7조(어문규범) ①국가는 한글맞춤법, 표준어규정, 외래어표기법, 국어의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(이하 “어문규범”이라 한다)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<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>

제14조(기능)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(이하 이 장에서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7.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

<국어의 로마자표기법> -문화관광부 고시 2000-8호, 2000. 7. 7

제2장 표기 일람

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.

1. 단모음

ㅏ	ㅑ	ㅓ	ㅕ	ㅡ	ㅣ	ㅞ	ㅟ	ㅛ	ㅜ
a	eo	o	u	eu	i	ae	e	oe	wi

제5항 ‘도, 시, 군, 구, 읍, 면, 리, 동’의 행정 구역 단위와 ‘가’는 각각 ‘do, si, gun, gu, eup, myeon, ri, dong, ga’로 적고, 그 앞에는 붙임표 (-)를 넣는다. 붙임표(-)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
(보기)

- 충청북도 Chungcheongbuk-do 제주도 Jeju-do
- 의정부시 Uijeongbu-si 양주군 Yangju-gun
- 도봉구 Dobong-gu 신창읍 Sinchang-eup
- 삼죽면 Samjuk-myeon 인왕리 Inwang-ri
- 당산동 Dangsang-dong 봉천 1동 Bongcheon 1(il)-dong
- 종로 2가 Jongno 2(i)-ga
- 퇴계로 3가 Toegyero 3(sam)-ga